

**제2660호**  
**2019. 5. 2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고 시

제2019-58호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2  
 제2019-59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5  
 제2019-60호 :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 6

● 공 고

제2019-405호 :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 7  
 제2019-423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10  
 제2019-43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58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목 적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 업 명 : 퇴계로88길 및 73길 일대 간판개선사업

3. 위치 및 규모

- 퇴계로88길 일대 구간 86개 점포 및 퇴계로73길 일대 구간 56개 점포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5. 사업기간 : 2019년 4월 ~ 2019년 12월까지

6. 사업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7. 소요예산 : 퇴계로88길 일대 215백만원, 퇴계로73길 일대 140백만원  
총 355,000천원(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시비)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1업소 당 2,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
-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8. 추진내용

-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구현 및 조화로운 간판배치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 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설치
- 간판개선·관리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간판개선 주민위원회」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 개선완료후 지속적 사후관리(불법간판 신고 등)

## 9.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총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수량 : 1업소 1간판</li> <li>※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li> <li>2.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li> </ol> </li> </ul>
벽면형 간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li> <li>○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li> <li>○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li> <li>▶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li> </ul> </li> </ul>
돌 출 간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위치 :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li> <li>○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li> <li>▶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세로크기는 3.5m 이내</li> </ul> </li> </ul>
창문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폭 20cm이하</li> <li>○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 면적 0.18m 이하</li> <li>○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li> <li>○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li> </ul>
기 타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li> <li>○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li> <li>○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li> <li>○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li> </ul>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 중구 조례 개정시 그 사항을 따른다.

## 10. 허가 및 신고

-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 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 11. 광고물 등의 심의

-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12. 위치도면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3.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59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 구 신축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예장동 1-15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8길 43	2019.05.29.	필동로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필동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신당동 171 외 10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407	2019.05.29.	왕십리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행정구역(왕십리동) 지명을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60호

###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처분일자 : 2019. 6. 3.
-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8조
- 3.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1	서울 주택 2005-0154	(주)디자인스타	이준철	서울시 중구 퇴계로 411, 4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 3월	2019. 6. 3. ~ 2019. 9. 2.
2	서울 주택 2015-0151	푸른건축산업	김창현	서울시 중구 다산로24길 21, 305호 (신당동, 청구별당)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 3월	2019. 6. 3. ~ 2019. 9. 2.
3	서울 주택 2015-0338	(주)에이엘공영	허재영	서울시 중구 난계로 17길 18(황학동)	변경신고자연 (2019.4.22.변경차폐)	경고	2019. 6. 3.

4.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02-3396-5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405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신청공고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2019년도 하반기에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
2. 신청기간 : 2019. 6. 3.~ 6.28.
3. 구비서류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에 의한 별지 제2 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첨부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도로굴착장기사업계획(‘19년~’23년)
4.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도로시설과 도로굴착팀 ☎ 02-3396-6123~4)
5. 신청요령
  -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조정 후 조정된 내용에 따라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 소재지 관할구청장(중구)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라. 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2020년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타 본 공고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로시설과 도로굴착팀(☎02-3396-61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 19년~'23년 장기 도로굴착사업 현황계획

□기관명: ○○사업소

연번	굴착공사명	원인자	도로굴착 년월및굴착일수			굴착규모			도로굴착 예정구간								
			년도	월	일수	폭(m)	연장(m)	연장(m <sup>2</sup> )	도로 종류	시점				종점			
										구명	도로명	번지	호	구명	도로명	번지	호
1	상수도 개량공사	○○수도 사업소	2016	4	20	2	10	20	시도차도	○○구	○○로	10		○○구	○○로	20	
2	하수도 개량공사	○○구청 하수과	2016	5	10	1.2	20	24	시도보도	○○구	○○로	10		○○구	○○로	20	
3	도시가스관 신설공사	○○도시 가스(주)	2016	8	5	1.2	30	36	구도차도	○○구	○○길	10	2	○○구	○○길	20	2
4	○○통신관로 신설공사	○○○(주)	2016	10	3	1.2	40	48	구도보도	○○구	○○길	10	3	○○구	○○길	20	3
5	상수도 개량공사	○○수도 사업소	2016	4	20	2	50	100	시도차도	○○구	○○로	10	4	○○구	○○로	20	4
6	하수도 개량공사	○○구청 하수과	2016	5	10	1.2	60	72	시도보도	○○구	○○로	10	5	○○구	○○로	20	5
7	도시가스관 신설공사	○○도시 가스(주)	2017	8	5	1.2	70	84	구도차도	○○구	○○길	10	6	○○구	○○길	20	6
8	하수도 개량공사	○○구청 하수과	2018	5	10	1.2	80	96	시도보도	○○구	○○로	10	7	○○구	○○로	20	7
9	도시가스관 신설공사	○○도시 가스(주)	2020	8	5	1.2	90	108	구도차도	○○구	○○길	10	8	○○구	○○길	20	8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423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제작·발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제공일자 : 2019. 5. 23.
- 제공받은 자 : 광화문우체국
- 제공목적 :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발송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유자 성명, 생년월, 주소, 소유필지 및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결정통지문 제작·발송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9. 5. 29 ~ 2019. 6. 12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구보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43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감면대상 범위 및 이용대상자 확대 등 「중구 추모의 집」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규정 마련 및 사용료 구 수입 처리규정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사시설 용어 일원화(안 제2조)
  - 장사법 제2조제15호 준용
- 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확대(안 제8조)
  - 제1호 개정, 제4호·제5호 신설: 범위 확대
- 다. 사용료 구 수입 처리규정 마련(안 제13조)
- 라.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 및 재지정(안 제14조)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별표3 신설)
- 마. 사용료 반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제15조 전면 개정 및 별표4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 (02)3396-5362, FAX : (02)3396-8732, 메일 : qweeszq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묘지·화장장·납골시설·산골시설 및 부속된”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상속자를”을 “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제3조 중 “납골·산골”을 “봉안·자연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사시설”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납골시설”을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에 따라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납골시설”을 각각 “장사시설”로, 같은 항 중 “받은자 및 그상속인”을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골시설”을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를 “서울 특별시”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서”를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사망 하여”로, “3일 이내”를 “5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납골시설”을 “장사 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3항 후단 중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간내”를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간 내”로, “없는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을조치”를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제1항에 의한 때에는 일정 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날”을 “발생한 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장사시설의 확충·유지및 관리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중구 세입으로 처리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등”을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천재지변·재해등”을 “천재지변·재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 중 “그사실”을 “그 사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료등의 반환)”을 “(사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환불해야 한다.

제1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③반환에 대한 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부또는”을 “전부 또는”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준수하여야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우에는운영”을 “경우에는 운영”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관한보고”를 “관한 보고”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위치(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중구 추모의 집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별표2]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징수 및 감면 기준  
(제13조 및 제14조 관련)

<장사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분	기 준(1기당)	기본	제14조 제1항에 의한 감면대상자
사 용 료	최초 (15년)	200,000	100,000
	연장·재연장 (1회 연장시 마다)	70,000	35,000

※ 관리비 :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자와 위탁협약 체결시 결정

## [별표3]

##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14조 관련)

법률명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별표4]

##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급기준(제15조 관련)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연차별	환급률
6개월이내	75%	5년 초과~6년	45%	11년 초과~12년	15%
6개월 초과~1년	70%	6년 초과~7년	40%	12년 초과~13년	12%
1년 초과~2년	65%	7년 초과~8년	35%	13년 초과~14년	10%
2년 초과~3년	60%	8년 초과~9년	30%	14년 초과~15년	7%
3년 초과~4년	55%	9년 초과~10년	25%	15년 초과	5%

※ 미사용 시 환불규정: 6개월 이내를 준용함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p>「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b>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b></p>				
<p>첨부: 화장증명서 1부,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p>				



[별지 제2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

No

사 용 시 설	명 칭	서울특별시 중구 추모의 집			
	구 분	공설장사시설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번호		규 모	1,700기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사용기간	년
허가조건		뒷면기재		교부사유	신규재교부
구청구분					
<p>「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p>					

(후면)

(허가조건)

1. 전면에 기재된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합동 안치하거나 집단 매장할 수 있습니다.
2.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는 재사용 연장 허가 시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립 장사시설을 사용 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에 의해 반환될 예정입니다.
4. 구립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립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 또는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당해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 등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재해의 예방, 복구 또는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구립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 중인 시설은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명 칭	서울특별시 중구 추모의 집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허가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신고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사유	주소 변경, 상속		
<p>「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신고인 (인)</p> <p><b>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b></p>			